



의안번호	제155호
회의 연월일	2024. 10. 21. (제550회 회의)

심의
·
의결
사항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(행정안전부령)

제출부서	경찰청 (생활안전교통국)
제출연월일	2024. 9. 30.

교통기획과장, 교통기획계장

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칩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환경 규제와 기술 발전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,
기존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 시험에 사용되던 차량 규격을
개정하여 다양한 차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
친환경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한 채점 기준을 마련하여 운전면허
시험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 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승차정원 30명 이상의 승합자동차”를 “승차정원 3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“1천15센티미터”를 “945센티미터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246센티미터”를 “240센티미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갓춘”을 “갓춘 승합자동차 또는”으로 한다.

별표 24 제1호가목(14) 시동상태유지의 감점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○시동을 꺼뜨릴 때마다

○4천RPM 이상으로 회전할 때마다

○전기자동차의 경우 가속페달 과조작으로 안전제동장치 등이 작동할 때마다

별표 24 제2호가목2)기본 주행 등 중 자)시동상태 유지의 감점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○가)부터 아)까지 및 차)의 시험항목 수행 중 엔진시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때마다

○4천RPM 이상으로 회전할 때마다

○전기자동차의 경우 가속페달 과조작으로 안전제동장치 등이 작동할

때마다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0조(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) ① 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	제70조(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차정원 30명 이상의 승합자동차	1. ----- 승차정원 3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
가. 차량길이: <u>1천15센티미터</u> 이상	가. ----- <u>945센티미터</u> -----
나. 차량너비: <u>246센티미터</u> 이상	나. ----- <u>240센티미터</u> -----
다.·라. (생략)	다.·라. (현행과 같음)
2.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화물자동차	2. ----- ----- ----- <u>갖춘 승합자동차 또는</u> ----- -----
가. ~ 라. (생략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3. ~ 10. (생략)	3. ~ 10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통기획과	
연 락 처	(02) 3150 - 0659